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5-20

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25고정981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	A
검 사	조아라(기소), 이성민(공판)
판 결 선 고	2026. 3. 24.

주 문

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 요지

피고인은 B와 C를 운영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 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.

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. 3. 16.경 쇼핑 플랫폼인 'D'와 'E'에 'F'를 판매하고자 게시하면서, 저작권자 주식회사 G이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인 'H'(저작권 등록번호 : I) 사진을 피고인의 위 D 및 E의 판매 페이지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2.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5-20

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런데 2026. 2. 2.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,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.

판사 곽윤경 _____